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20276
----------	-------

제안연월일 : 2026. 7.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216184	김성원의원	‘26. 1. 20.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6.3.1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 고 및 대체토론 후 해양수산법안심사 소위원회 회부 -제434회국회(임시회) 제2차 해양수산 법안심사소위원회(‘26.4.29.) 상정, 축 조심사
	2216334	윤준병의원	‘26. 1. 27.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해양 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 (‘26.4.20.) -제434회국회(임시회) 제2차 해양수산 법안심사소위원회(‘26.4.29.) 상정, 축 조심사

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9.)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

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나.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5.12.)

는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양 레저 활동의 증가 등으로 인해 수상에서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장 구조·구급활동 및 긴급구조 지원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구조·구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상(死傷) 결과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감면해 주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위촉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구조·구급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구급대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상 구조·구급활동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함.

또한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선박이 조난된 선박을 긴급히 예인하는

과정에서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현행법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만 면책 규정을 두고 있어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구조·구급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형의 감면 근거를 신설하여 수난구호활동 종사자 및 민간 참여자의 적극적인 임무 수행을 보장하고, 긴급 예인 시의 면책 대상에 현행법상의 수난구호협력기관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호, 제25조의2 신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국가기관”을 “구조본부, 소방관서 및 수난구조협력기관”으로 한다.

제3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구조·구급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한 자가 그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조난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구조·구급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구급활동 종사자 혹은 참여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조난된 선박등의 예인 시 책임) 조난된 선박등을 예인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인으로 인하여 조난된 선박등이 파손되거나 멸실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조난된 선박등을 예인하는 자는 피예인선의 선장이나 소유자에게 그 뜻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제21조(조난된 선박등의 예인 시 책임) ----- ----- ----- ----- ----- ----- ----- ----- -----. 1. · 2. (생략) 3. 국가기관에 소속된 선박이 조난된 선박등을 긴급히 구난하기 위하여 예인하는 경우
<u><신설></u>	제25조의2(<u>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u>) 구조·구급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한 자가 그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조난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한 경우 해당 구조·구급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구급활동 종사자 혹은 참여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